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36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김원이·이해식·김남근

서영석 · 김선민 · 박지혜

전진숙 • 민병덕 • 박홍근

김교흥 · 김동아 · 김태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선언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높아지

고 있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 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 려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3(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 설치 지원)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다
	음 각 호의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신ㆍ재
	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
	<u>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ㆍ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